

의안번호	제 492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4월 일 (제 289 회)

충청북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감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0년 4월 6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492
----------	-----

제출연월일 : 2010년 4월 6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합검사시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법 개정예 따라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소유자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검사(이하“특정경유자동차 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 ⑦ “생략”